

■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5. 8. 12.> 재외동포365민원포털(g4k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 재외국민등록신청서

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심사관
신청인	성명(한글)	성명(영문)
	주민등록번호(국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생년월일 및 성별)	
	여권번호	병역관계 ※ 해당란에 [√] 표시하세요. [ ] 병역필 [ ] 미필 [ ] 해당 없음
연락처	대한민국 내 등록기준지	※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작성하세요.
	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	※ 체류국 정부에 등록된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하세요.
	체류국 내 연락처	(전화번호) (E-mail)
체류 정보	최초 입국일	
	체류목적 (※ 해당내용 ○)	거주, 동거, 유학, 취업, 투자, 주재(상사원/공무원), 기타( )
	체류자격 (※ 해당내용 ○)	영주, 가족체재, 유학, 취업, 투자, 상용, 공무, 워킹홀리데이, 기타( )
추가 정보 <small>※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작성</small>	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	(체류국 내 직업) (소속기관)
	국내 연고자 연락처	※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.(해외체류 중 사고발생시 지원을 위하여 필요) (성명) (연락처)

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, 「재외국민등록법」 제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주

대사관·총영사관(

분관·출장소)의 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체류국의 사증(查證), 출입국심사 날인, 출입국 확인서 등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(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행정정보 공동이용	1. 여권 2.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3.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
	본인정보 제공요구	기본증명서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**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**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,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본인에 대한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인이 직접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\* 대리신청의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리인이 직접 신청인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본인정보보유기관장 귀하

**유의사항**

-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, 우편, 모사전송, 재외동포365민원포털(g4k.go.kr)를 통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.
- 등록대상자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,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 및 등록대상자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및 대리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제시해야 합니다.
- 대리신청을 위하여 등록대상자 본인은 아래 '위임장'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 출입국 사실 등(여권, 주민등록표 초본,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, 병적증명서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, 기본증명서는 본인정보 제공요구 동의와 관계없이 대리인이 직접 신청인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미성년자의 등록신청은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,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직접 할 수 있습니다.
- 체류국 최초 입국일은 체류국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다른 국가에서 체류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의미합니다.
-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등록공관 담당자에게, 주소나 거소가 변경되어 등록공관이 변경되면 새로 등록할 공관의 담당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귀국신고를 하여야 하며, 재외동포청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(g4k.go.kr)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**위임장**

본인은 「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재외국민등록의 신청을 위한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.

년 월 일

위임한 사람(신청인)

(서명 또는 인)

위임받은 사람(대리인)

성명

생년월일

신청인과의 관계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<sup>2</sup>]